

[첨부2] 맞춤형훈련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

<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맞춤형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람>

- 1)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
- 2) 훈련 중 취업 및 치료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
- 3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 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
(다만,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맞춤형훈련 참여 가능)
- 4)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
(다만, 야간과정·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생은 맞춤형훈련 참여 가능)
- 5) 모집 공고일 현재 타 사업체와 맞춤형훈련을 수행중인 사람
- 6) 맞춤형훈련 시작일 기준,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(고용보험 가입자, 휴직 포함)